

조세 재정

2017. 12. 29(통권 제62호)

BRIEF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

정도진 소장

박윤진 재정통계팀장(044-414-2569)

정수진 전문연구원(044-414-2573)

최중갑 공인회계사(044-414-2582)



BRIEF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

정도진 소장

박윤진 재정통계팀장 (044-414-2569)

정수진 전문연구원 (044-414-2573)

최중갑 공인회계사 (044-414-2582)

I.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배경 및 추진과정	02
II.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03
III.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요 내용	05
IV. 회계기준 비교	14
V.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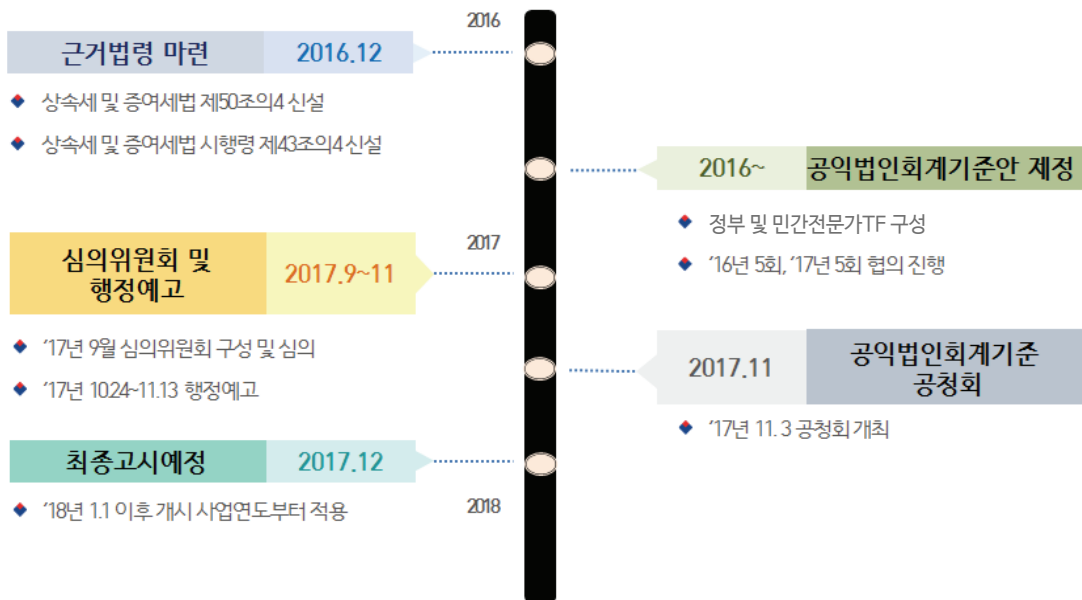


* 본고는 2017년 11월 3일에 개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I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배경 및 추진과정

- ●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질수록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외부회계감사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 ● 하지만 결산서류 작성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를 신설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근거 마련
 - '16년 정부와 민간전문가(조세재정연,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로 구성된 전문가TF 운영 · 개최를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고, '17년 9월 27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 '17년 10월 24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10.24일~11.13일) 하였고, 11월 3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후 12월 중 고시될 예정임

[그림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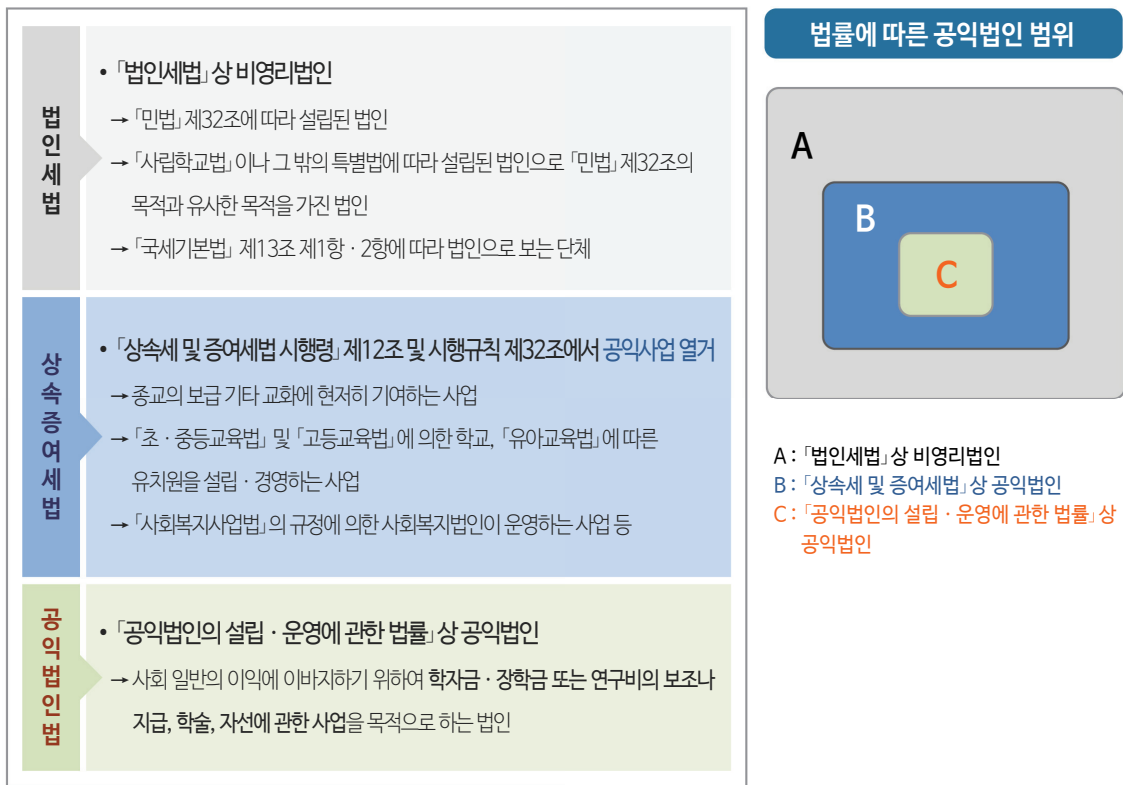


II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1. 공익법인의 개념 및 범위

-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의 법인을 말하며, 각 법률에 따라 정의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범위는 [그림 2]와 같음

[그림 2]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범위 비교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한정하지 않는 반면,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임

2. 공익법인 현황 및 회계기준 적용대상

●● 공익법인 현황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34,743개의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됨

〈표 1〉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연도	종교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합계
2011	17,753	3,028	1,681	3,229	658	700	2,121	29,170
2012	17,708	3,093	1,702	3,394	743	759	2,110	29,509
2013	17,629	3,135	1,704	3,510	783	817	2,271	29,849
2014	17,542	3,119	1,697	3,499	786	813	2,276	29,732
2015	18,360	3,537	1,770	4,455	1,367	1,001	4,253	34,743

출처: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2017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¹⁾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²⁾임

1)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총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표 2〉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년	2014년
총 공익법인 수	34,743	29,732
공시대상 공익법인 수	8,585	8,132

출처: 한국가이드스타, 『2016 한국공익법인 연감』, 2017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예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해당 근거법령에 따른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고,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또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복식부기방식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둠

Ⅲ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요 내용

1. 총칙

●● 기준적용대상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의 법인 중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

*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

●● 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 재무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와 기타사업부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그림 3] 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되고 이윤의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공익목적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윤과 재산을 임의로 다른 목적사업에 전용·배분 못함
- 따라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재무제표는 통합하여 작성하되 사업별로 구분하여 공시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구분 기준은 법인의 정관상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음
 - 내부관리목적으로 복수의 구분된 단위로 회계를 하는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음

2. 재무상태표

● ● 재무상태표 양식

- 재무상태표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함

〈표 3〉 공익법인 재무상태표 예시

재무상태표
제 X기 20xx년 x월 x일 현재

(단위: 원)

공익법인명			
과목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유동자산	300	100	200
비유동자산	1,000	500	500
투자자산	300	150	150
유형자산	300	150	150
무형자산	300	150	150
기타비유동자산	100	50	50
자산총계	1,300	600	700
부채			
유동부채	100	50	50
비유동부채	300	150	1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100
부채총계	500	200	300
순자산			
기본순자산	200	100	100
보통순자산	500	200	300
순자산조정	100	100	-
순자산총계	800	400	40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300	600	700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 표시

-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비용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으로 인식 가능

[그림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표시

<재무상태표 표시 예시>		<운영성과표 표시 예시>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자산	자산	사업수익	사업수익
부채	부채	사업비용	사업비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
순자산	순자산	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당기운영이익(손실)	당기운영이익(손실)

●● 순자산의 구분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
 - 일반영리법인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지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주주의 개념이 없으므로 순자산으로 구분함

<표 4> 순자산의 구분

구 분		설 명
순자산	기본순자산	(정의)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보통순자산	(정의)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 (구분)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되며, 적립금이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
	순자산조정	(정의) 순자산의 가감성격 (구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

-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공익사업 수행결과 축적된 잉여금과는 별도로 구분 관리해야 하며, 통상 공익법인에서 기본재산 등으로 분류된 항목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함
- 보통순자산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 및 기타사업을 수행하면서 당기운영이익이 발생하면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고, 잉여금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경우 적립금 계정을 사용하여 구분함

3. 운영성과표

● ● 운영성과표 양식

- 운영성과표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표시함으로써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있음

〈표 5〉 공익법인 운영성과표 예시

운영성과표				
제X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단위: 원)				
공익법인명	과목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1,200	700	500
	사업비용	500	300	200
	사업수행비용	200	100	100
	일반관리비용	200	100	100
	모금비용	100	100	-
	사업이익	700	400	300
	사업외수익	300	100	200
	사업외비용	200	100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00	2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600	200	400
	법인세비용	100	-	100
	당기운영이익	500	200	300

●● 사업수익(비용)과 사업외수익(비용)의 구분

-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의미함
 - 공익목적사업상 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
 -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이 공익목적사업 활동의 주된 원천인 경우 사업수익으로 분류
-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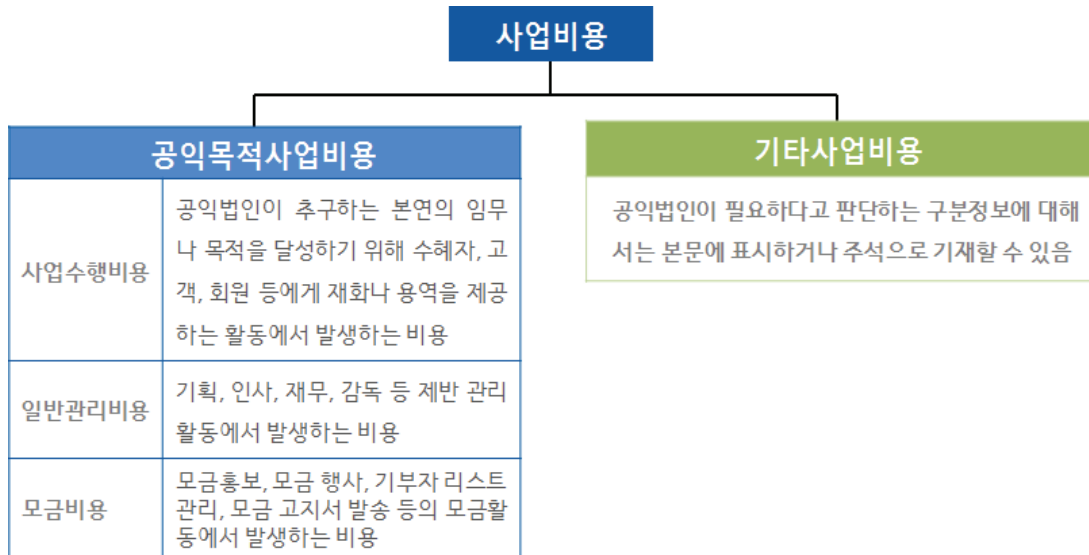
●● 수익인식 기준

-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기부금 수익은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받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인식
-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인식
-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

●● 비용의 분류

-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
- 공익목적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다시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분류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

[그림 5] 공익법인 비용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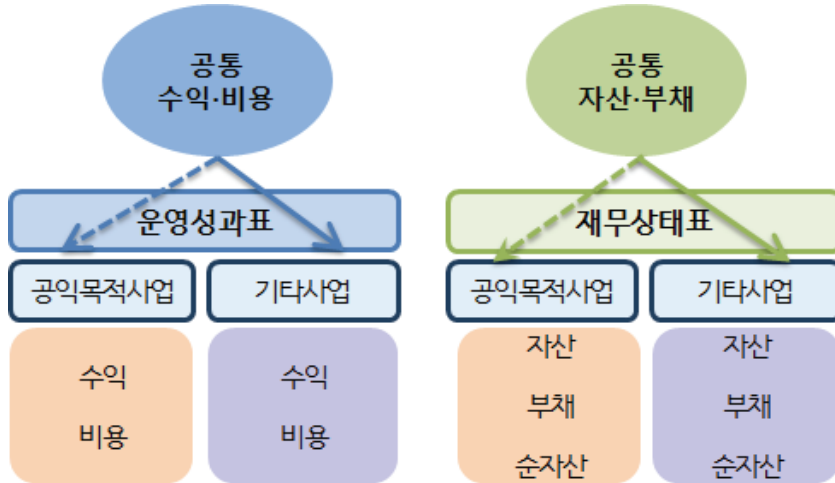
- 기능별(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성격별(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등)로 비용을 구분하여 기부금 사용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음
- 특히, 기능별 비용 구분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지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 법인세비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회계와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
 - 공익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일반기업과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회계를 적용함
 - 다만, 중소기업 규모의 공익법인의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회계처리 방법 적용 가능

●● 공통수익·비용, 공통자산·부채의 배분

[그림 6] 공통수익·비용 및 공통자산·부채의 배분



-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4. 자산·부채의 평가

●● 자산 평가

-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교환·현물출자·증여 및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함
-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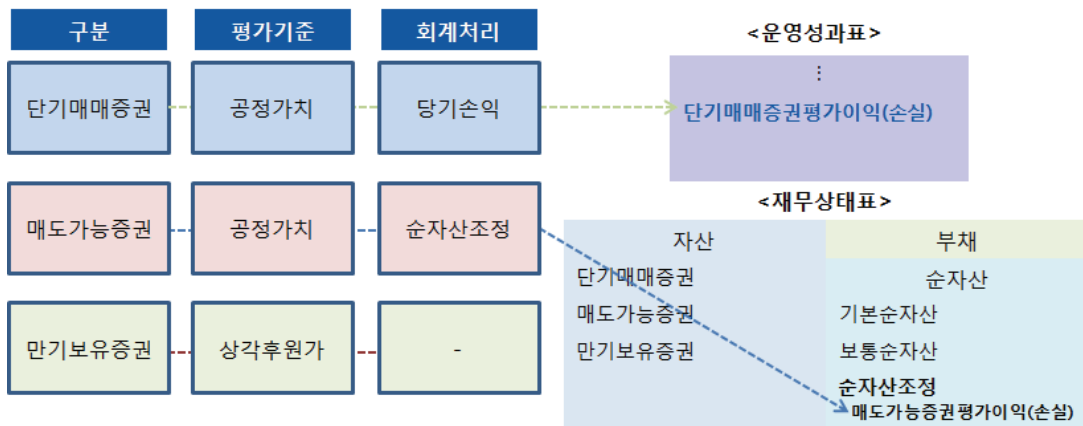
● ● 유형자산의 재평가

-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음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순자산조정(유형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유형자산재평가손실)으로 인식

● ● 유가증권의 평가

-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함
- 다만,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따른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

[그림 7] 유가증권 분류 및 평가



5. 주식

● ● 공익법인의 필수적 주식기재사항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식기재사항에서 일반적인 항목 외에 공익법인의 특성에 따라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라고 여겨지는 항목들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물기부의 내용
 -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 거래 내역
 -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
- 특히,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중 자본변동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사항으로 작성 양식은 <표 6>과 같음

<표 6> 순자산변동내역의 공시

과 목	통합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	×××	×××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	(×××)
전기오류수정	(×××)	(×××)	(×××)	(×××)
수정후 순자산	×××	×××	×××	×××
기본순자산증감	×××		(×××)	
당기운영이익(손실)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적립금 전입		×××	(×××)	
당기말	×××	×××	×××	×××

●● 비교표시

-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
 - 재무제표는 비교표시를 원칙으로 하나 최초 적용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2018회계연도는 비교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IV 회계기준 비교

1.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7>과 같음

<표 7>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구 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재무제표 구성요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재무제표 구분경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
사업비용 (영업비용)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표시 공익목적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표시

〈표 7〉의 계속

구 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의 분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순자산 2. 보통순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금 - 잉여금 3. 순자산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결손금)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 가능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채 인식 불가
기부금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 	-
법인세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회계와 중소기업회계 처리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
유형자산 감가상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음 	-
유형자산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음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시점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유가증권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 •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순자산조정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 •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 사립학교 · 의료기관 회계기준과의 비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사립학교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음

<표 8>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사립학교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비교

구 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사립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대한 특례규칙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되는 기준 제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정함
법적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사립학교법」 제33조	「의료법」 제62조
적용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
적용제외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재무제표 구성요소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주석	1. 자금계산서 2. 대차대조표 3. 운영계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의 분류	1. 기본순자산 2. 보통순자산 3. 순자산조정	1. 출연기본금 2. 적립금 3. 기본금조정 4. 운영차액	1. 기본금 2. 자본잉여금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 이익잉여금(결손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 가능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표시	-	결산서에 인식하는 경우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V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공익법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통일성 확보
 -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자체 회계규정 등 자의적인 회계처리에서 벗어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함
 - 공익법인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회계기준 적용으로 공익법인 간에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소

- 동일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공익법인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향상
 -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해 공익법인 간 비교가능성 제고
 -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 간 재무정보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 사업운영에 대한 정보로 활용 가능

-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에 따른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기부문화 활성화 기여
 -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표시를 통해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대한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
 - 공익법인 비용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비용의 기능별, 성격별 교차분류 등)으로 공익법인 간 비교를 통해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많아짐
 - 일반재무보고목적에 따른 공익법인 재무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2017.
- 한국가이드스타, 『2016 한국 공익법인 연감』, 2017.



BRIEF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

2017. 12. 29(통권 제62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3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주)아미고디자인
-

